

대학원 경제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1.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응시자가 당해 과목을 수강한 당시의 강의 담당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응시자가 당해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당해 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과목의 최근 담당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지정한다.

3. 당해 교수가 퇴직, 휴직, 출장 등으로 유고된 경우에는 학과주임이 당해 과목에 가장 인접한 분야의 전공교수를 선정·지정하고 추후 이를 학과교수회의에서 공표한다.

4.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합격기준)**

1.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⑥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52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97점 이상
 4. TOEFL(iBT) 71점 이상
 5. TOEFL(PBT) 527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의 모의TOEIC 600점 이상
 7.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저자로 국내전문학술지(미등재 포함)에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경제학·경제사 전공 공통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서양경제사연구 중 최소 2과목을 포함한 3과목 선택	1. 경제학전공 - 필수과목: 미시경제학특수연구 거시경제학특수연구 - 선택과목 2 2. 경제사전공 - 선택과목 4

단서 ① 「연습」 과목은 선택과목에서 제외한다.

② 박사과정 선택과목의 경우, 특정교수의 담당과목이 1과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